

예 산 총 칙

2017년도 추경 3 회

제 1 조 2017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구 분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합 계	447,746,392	13,432,392
일반회계	426,868,565	12,806,057
특별회계	20,877,827	626,335
기타특별회계	20,877,827	626,335
상수도사업	2,153,150	64,595
하수도사업	2,175,158	65,255
수질개선	8,704,054	261,122
자활 및 생활안정기금	558,200	16,746
의료급여기금	659,109	19,773
소득특화사업	3,727,000	111,810
농공단지조성사업	2,290,484	68,715
공영개발사업	480,364	14,411
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발전사업	130,308	3,909

제 2 조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는 붙임 "세입·세출 예산"과 같다.

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1,208,293천원으로 한다.

제 4 조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9,2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5 조 다음경비에 부족액이 생겼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상호 이용할 수 있다.

1. 총액인건비에 포함되는 경비
2. 재해대책 및 복구비